

수입식품 중

농약[]

잔류허용기준

설정[]

변경[]

요청서

동물용 의약품[]

설정면제[]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설정: 12개월 변경/설정면제: 7개월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요청인	업소명(상호)	대표자 성명
	영업의 종류	영업허가(신고)번호
	주소	
	전자우편 주소	전화번호 (팩스번호)

기준 설정/변경/설정면 제 요청 화합물명	
기준 설정/변경/설정면 제 요청 식품명	
요청사유	※ 요청의 배경, 목적, 타당성,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.(필요시 별지 사 용)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3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
(동물용 의약품)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/변경/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요청인

귀하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※ 첨부자료	수수료
1.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 부	1.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(각 품 목별로 부과)
2.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	- 신규 설정: 30,000,000원
3.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	- 변경 및 설정면제: 10,000,000원
4.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	2.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
5.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	- 농약: 5,000,000원(식품별로 부과)
	- 동물용 의약품: 10,000,000원(동물별로 부과)

처리 절차

